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대한수의사회 사무처

지난 2005년 5월 31일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되는데 이어 각각 2006년 1월 26일과 3월 14일 「수의사법 시행령」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의사국가시험의 과목변경에 관한 수의사법 시행령 제9조를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현재 적용중이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의사법」전문과 별지서식 등을 첨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법령집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전문 및 별지서식 등은 우리회 홈페이지 회원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 (법 제9조제2호)

현재는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학의 학제와 관계없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국내 수의학제가 1998년에 6년제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면허정지처분에 따른 진료업의 금지 (법 제32조제4항 신설)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유로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함.

3. 권한의 이양 등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30조제1항)

(1)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수행하는 공수의(公獸醫) 위촉 및 지도·감독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고, 이에 따른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수당

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2) 현재 농림부장관이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에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하는 지도·명령을 앞으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도 할 수 있도록 함.

4. 진료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영 제2조)

- (1) 인수공통질병(人獸共通疾病)의 예방, 야생동물에 대한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는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2)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에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도 포함되도록 함.

5.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상설기구화(영 제4조)

수의사국가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수의사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구성하고 있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국가시험제도 개선·운영, 출제위원 선정, 시험문제의 출제, 과목별배점 및 합격자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6. 수의사국가시험과목 조정

(영 제9조 및 부칙 제1항·제2항)

- (1) 현행 시험과목은 1974년에 정하여진 후 1998년 수의학계의 6년제로의 개편 및 교과목 다양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시험과목을 현행 10개 이상의 과목에서 4개 분야별 과목으로 변경하고, 대학·학생 등

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 (3) 시험과목을 교육과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수의학교육의 내실화와 수의인력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7. 수의사회의 윤리위원회 설치(영 제18조의2 신설)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서 규정한 수의사윤리 위반 관련 면허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수의사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방법 보완(영 제20조)

- (1) '수의사법' 상 농림부장관 등은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하여 지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동법 시행령에 수의사에 대한 지도·명령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2)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물병원 외에 수의사에 대하여도 시설·업무개선의 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3) 연구기관·학교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지도·명령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9. 과잉진료행위 등 범위 규정(영 제20조의2 신설)

‘수의사법’에서 위임한 수의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과잉진료행위의 범위를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을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등으로 정함.

10.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 변경

(규칙 제8조의2 신설)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 중 소·돼지 등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11. 진단서 등 관련서식 신설·변경(규칙 제9조 등)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를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신설하고 일부 별지서식을 수정변경함(※ 시행규칙 별지서식 참조) [대](#) [수](#)



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46호]

- 제정 56.12.26 법률제412호
- 전문개정 74.12.26 법률제2739호
- 개정 81. 4.13 법률제3441호(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 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 개정 94. 3.24 법률제4747호
- 개정 96. 8. 8 법률제5153호(정부조직법)
- 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 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개정 99. 3.31 법률제5953호
- 개정 01.12.31 법률제6570호
- 개정 02. 1.14 법률제6611호
- 개정 05. 5.31 법률제754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1999.3.31>

1. “수의사”라 함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끼·고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6 대통령령 제19293호]

- 제정 75. 8.14 대통령령제7563호
- 개정 75. 8.14 대통령령제7738호
- 개정 81. 9. 3 대통령령제10455호
- 개정 89. 9. 5 대통령령제12799호
- 개정 90.12.18 대통령령제13184호
- 전문개정 94.12.19 대통령령제14432호
- 개정 96. 8. 8 대통령령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개정 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개정 99. 2.26 대통령령제16128호
- 개정 99. 6.30 대통령령제16447호
- 개정 02. 6.19 대통령령제17632호
- 개정 06. 1.26 대통령령제1929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6>

제2조 (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6>

1. 노새·당나귀
2.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14 농림부령 1519호]

- 제정 57. 6. 5 농림부1령 제53호
- 개정 58.12.22 농림부1령 제69호
- 개정 62. 4.25 농림부1령 제93호
- 개정 64. 8.29 농림부1령 제170호
- 개정 66. 2. 9 농림부1령 제206호
- 개정 69. 2. 9 농림부1령 제396호
- 개정 75. 6.28 농수산부령 제597호
- 개정 81. 9.11 농수산부령 제840호
- 개정 84. 1.10 농수산부령 제904호
- 개정 88.12.27 농림수산부령 제1011호
- 개정 90. 9. 1 농림수산부령 제1050호
- 개정 95. 1.20 농림수산부령 제1167호
- 개정 97. 1.17 농림부2령 제1250호
- 개정 99. 2. 9 농림부2령 제1314호
- 개정 99. 8.10 농림부2령 제1338호
- 개정 02. 7. 5 농림부령 제1418호
- 개정 06. 3.14 농림부령 제151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양이·가금·꿀벌·어패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3. “동물진료업”이라 함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p> <p>4. “동물병원”이라 함은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p> <p>제3조 (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1994.3.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수의사</p> <p>제4조 (면허)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전문개정 1994.3.24]</p> <p>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1994.3.24, 1999.3.31, 2005.5.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질환자·정신지체자 2. 삭제 <1994.3.24>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마약·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수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 	<p>제2조 (면허증의 교부) ①『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2006.3.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2. 법 제9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증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나.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대학의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6조 (면허의 등록) ①농림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4,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3.24, 1996.8.8>

제7조 삭제 <1994.3.24>

3.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응시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명·상반신 반명함판) 2매
-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의사면허증 교부대상자의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2006.3.14>
1. 성명(한글 및 한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 ③농림부장관은 합격자발표일부터 2월 이내(법 제9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제3조 (면허증 및 면허대장등록사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그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정지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또는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6.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제4조 (면허증의 재교부 등)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 받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1999.8.10, 2006.3.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잃어버린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경위서와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면허증과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 당해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p>제5조 (면허증의 갱신) ①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997.1.17></p> <p>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절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교부신청개시일 2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실경위서)과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1999.8.10></p>

수의사법

제8조 (수의사국가시험) ①수의사국가시험은 매년 농림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1994.3.24, 1996.8.8>

②수의사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3.24, 1996.8.8>

④수의사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응시자격)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3.24, 1996.8.8, 1999.3.31, 2005.5.31>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3. 삭제 <1999.3.31>

제9조의2 (수험자의 부정행위) ①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수의사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3.24]

수의사법 시행령

제3조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부에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8.8, 2006.1.26>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6>

②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6.8.8>

③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차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6.8.8, 2006.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6.1.26>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농림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1996.8.8, 2006.1.26>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06.1.26>

1. 국가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출제 · 과목별배점 및 합격자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⑦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6조 삭제 <1999.2.9>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1.26></p> <p>제8조 (공고) 농림부장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의사국가시험관리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수의사국가시험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시험과목·시험장소·시험일시·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6.1.26></p> <p>제9조 (시험과목등) ①수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8.8, 2006.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수의학 2. 예방수의학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3. 임상수의학
4. 수의법규·축산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신설 2006.1.26〉

③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06.1.26〉

④국가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2006.1.26〉

제9조의2(출제위원) ①농림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당해 국가시험의 합격자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6]

제10조 (응시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6.1.26〉

제11조 (관계전문기관의 수의사국가시험관리등) ①농림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1996.8.8〉

제7조 삭제 〈2006.3.14〉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제1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4.3.24]</p> <p>제11조 (진료의 거부금지) 동물진료업을 영위하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를 당해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림부장관” 및 “농림부차관”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농림부의 수의업무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농림부소속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6.8.8></p> <p>제12조 (수의사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6.8.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양축농가에 대한 봉사 활동을 위한 진료행위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 	<p>제8조 (수의사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진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7.1.17, 2006.3.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시장·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에서 이웃의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다른 양축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응급처치행위 <p>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06.3.14]</p>

수의사법

제12조 (진단서 등) ①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투약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증 폐사한 경우에 교부하는 폐사진단서는 다른 수의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다.

③수의사는 그가 진료 또는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3.31>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교부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3.14>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3.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분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제10조 (증명서등의 교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가 교부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증명서 :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증명서 :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 별지 제9호서식

제11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성별·이름·연령(불명시는 추정연령)
2.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약의 명칭·성분분량·용법·용량·보관방법·사용기간
4.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5. 동물병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6. 수의사의 성명·면허번호

제12조 삭제 <1999.2.9>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 ①수의사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5.5.31></p> <p>제14조 삭제 <1999.3.31></p> <p>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6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9, 2006.3.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료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진료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2. 검안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검안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연월일(불명시는 추정연월일)또는 살처분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소견 <p>제14조 삭제 <1999.8.10></p>

수의사법

제3장 동물병원

제17조 (개설) ①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개정 1994.3.24>

1. 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1997.12.13, 1999.3.31, 2001.12.31>

④삭제 <1999.3.31>

⑤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①삭제 <1999.3.31>

②동물병원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중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③삭제 <1999.3.31>

[본조신설 1994.3.24]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6>

1. 개설자가 의사인 동물병원 : 진료실·처치실·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2. 개설자가 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세부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6>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에 대한 제3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2006.3.14>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삭제 <2006.3.14>
3. 의사면허증 사본 1부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2002.7.5, 2006.3.14>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3. 법인의 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법 인등기부등본을 제출 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제18조 (휴업·폐업의 신고)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 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1.12.31></p>		<p>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4></p> <p>④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2006.3.14></p> <p>⑤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장비 및 시설명세서에 기재된 기구·장비 중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7.5, 2006.3.14></p> <p>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뒷면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2006.3.14></p> <p>제16조 삭제 <1999.8.10></p> <p>제17조 삭제 <1999.8.10></p> <p>제18조 (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2002.7.5, 2006.3.14></p>

수의사법

제19조 삭제 <1999.3.31>

제20조 삭제 <1999.2.5>

제21조 (공수의) ①시장·군수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1999.3.31, 2001.12.31, 2005.5.31>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4.3.24, 1996.8.8, 2001.12.31, 2005.5.31>
- ③삭제 <2001.12.31>

제22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①시장·군수는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삭제 <1999.8.10>

제20조 삭제 <1999.2.9>

제21조 (축산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본조신설 2002.7.5]

제22조 (공수의의 업무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배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수의사회</p> <p>제23조 (설립) ①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9.3.31></p> <p>②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삭제 <1999.3.31></p> <p>제24조 (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3.24, 1996.8.8></p>	<p>제14조 (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p>제15조 (정관 기재사항) 수의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지부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제25조 (지부) ①수의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7.12.13, 1999.3.31></p> <p>②삭제 <1999.3.31></p> <p>제26조 (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7조 (위탁<개정 1999.3.31>) ①삭제 <1999.3.31></p> <p>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4.3.24, 1996.8.8, 2001.12.31></p> <p>제28조 삭제 <1999.3.31></p>	<p>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p> <p>제16조 (임원) ①수의사회에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정관이 정하는 수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임원은 수의사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제17조 삭제 <1999.2.26></p> <p>제18조 (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6.30]</p> <p>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1.26]</p> <p>제19조 (업무의 위탁) 농림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의 연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1999.6.30]</p>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제29조 (경비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보건 향상과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4.3.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감독</p> <p>제30조 (지도와 명령)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의 진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2005.5.31></p> <p>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역과 진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1997.12.13></p> <p>제31조 (보고 및 업무감독) ①농림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진료상황과 가축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1.12.31]</p>	<p>제20조 (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8.8, 1999.2.26, 2006.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기구·장비의 대국민지원지도와 동원명령 2.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방지 및 동물질병의 예방과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업무 개선의 지도와 명령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발생의 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지도와 명령 	

수의사법

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①농림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1999.3.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수의 업무를 행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3회 이상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4.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농림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5.5.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제제)를 처방·투약한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한 때
4.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5.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6.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
3.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6. 법 제11조, 법 제12조제1항·제3항, 법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6.1.26>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 (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7.1.17, 2006.3.14>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 및 처치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p> <p>2. 삭제 <1999.3.31></p> <p>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때</p> <p>④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효력정지기간중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전문개정 1994.3.24]</p> <p>[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 <1994.3.24>]</p> <p>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개정 1999.3.31>)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1999.3.31, 2001.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설신고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p>[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1994.3.24>]</p>		<p>제25조 (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동물병원개설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5></p> <p>②시장·군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기간을 기재하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2.7.5> [전문개정 1999.8.10]</p>

수의사법

제6장 보칙

제34조 (연수교육) ①농림부장관은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본조신설 1994.3.24]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1994.3.24)]

제35조 삭제 <1999.3.31>

제36조 (청문) 농림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전문개정 1999.3.31]

제37조 (권한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2001.12.31>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1994.3.24>]

제38조 삭제 <1999.3.31>

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 삭제 <1997·12·31>

제22조 삭제 <2006.1.26>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의사연수교육) ①수의사회 회장은 법 제34조 제3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기타 연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 회장이 정한다.

④수의사회 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⑤수의사회 회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연수교육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7, 2006.3.14>

제27조 삭제 <2002.7.5>

제28조 (수수료) ①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수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및 동물병원의 개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의사국가시험응시수수료: 2만원
2. 면허증재교부 및 재부여수수료: 2천원
3. 동물병원개설신고수수료: 5천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동항제3호의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10]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9.3.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자 [전문개정 1994.3.24]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1994.3.24)] <p>제40조 삭제 (1999.3.31)</p> <p>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3.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3.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을 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삭제 (1999.3.31)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개설자 	<p>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19]</p>	<p>제2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3.14)</p>

수의사법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8.8, 1999.3.31, 2001.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3.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4.3.24]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739호,1974.12.26〉</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자격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수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가축의 진료업무를 개업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때에는 도지사는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공수의로 임명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수의로 본다.</p> <p>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p> <p>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4432호,1994.12.19〉</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동물병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1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5135호,1996.8.8〉</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p> <p>〈61〉수의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항·제4항, 제8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본문·제3호,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차관”을 각각 “농림부차관”으로 한다.</p> <p>제3조, 제4조제2항·제5항 및 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p> <p>제9조제1항제11호, 제10조, 제12조제3호 및 제23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p> <p>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소속공무원”을 “농림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p> <p>〈62〉내지 <116>생략</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167호,1995.1.20〉</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수의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본다.</p> <p>제3조 (수의사면허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수의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사진(신청일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 1매 <p>제4조 (동물병원관리수의사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관리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 후단, 동조 제2항2호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 (진료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의사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보수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의 지부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p>

수의사법

률)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수의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개정전의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4747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사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대학에 입학한 자가 그 대학에서 수의학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때에는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대학부설동물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에서의 이 법 인용)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의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

수의사법 시행령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8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7호,19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2호,2002.6.1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3호, 2006.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조·제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한 동물병원의 진료비로 보되, 수의사회의 지부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진료비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의사연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수의사회회장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수의사연수계획을 1995년 2월 28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0호,1997.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14호,19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호,19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200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호, 2006.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 생략 <48>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호·제3호, 제14조, 제21조제1항 본문·제6호, 동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 제6조제3항, 제14조,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본문,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p> <p><49>내지 <69>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p> <p>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p> <p>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 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p>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②생략</p> <p>부칙 <제5953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의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④(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12.31></p> <p>부칙 <제6570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한 자로 본다.</p> <p>부칙<기르는어업육성법> <제6611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p>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p>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기르는데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p> <p>⑤생략</p> <p>부칙 <제7546호,2005.5.3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 2. 외국의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 <p>③(공수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위촉은 이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위촉으로 본다.</p>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삭제 2006. 1. 26>

[별표 2] <개정 2002. 6. 19>

과태료부과기준(제23조 제3항 관련)

(단위: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자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기준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자	법제41조제1항제1조	200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법제41조제2항제1호	100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50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2호	300
5.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	50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5호	20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6호	50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신설 2006.3.14>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제8조의2관련)

개설자별	시설기준
수의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처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다만,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위해 방호시설을 함께 갖추는 것 조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 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처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다만,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위해 방호시설을 함께 갖추는 것 조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임상병리검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미경·세균배양기·혈구계산기·항온수조·굴절계·마이크로피프·교반기·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물병원의 건물총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 1. 위 표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병용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의 면적기준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병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2. 양축농가가 사용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을 말한다)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의 시설 중 일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별표 2] <개정 2006.3.14>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가지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해당처분의 기준에 의하되, 그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2년이내에 개별기준 동일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업무정지 기간중에 정지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다.
4. 동물병원시설에 대하여는 아래표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시설을 보완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이 기준의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6.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정상을 참작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II.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비고
		1차	2차	3차	
1. 수의사가 법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때	법 제32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수의사가 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수의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법 제32조제1항제3항	면허취소			
3. 수의사가 자신의 수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법 제32조제1항제4호	면허효력	면허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비고
		1차	2차	3차	
대여한 때		정지 12월			
4. 수의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1호	면허효력 정지 6월	면허효력 정지 9월	면허효력 정지 12월	
5. 수의사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2호	면허효력 정지 6월	면허효력 정지 9월	면허효력 정지 12월	
6. 수의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3호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3월	면허효력 정지 6월	
7. 수의사가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4호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8. 수의사가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5호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9.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6호				
가.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영 제20조의2제1호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나.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영 제20조의2제2호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다.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영 제20조의2제2호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라. 예후가 불명확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 및 처치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영 제20조의2제2호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마.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영 제20조의2제2호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비고
		1차	2차	3차	
바.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영 제20조의2제3호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사.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없는 자에게 고용 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영 제20조의2제4호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아.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영 제20조의2제5호	면허효력 정지 7일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3월	
자. 법 제11조, 법 제12조제1항·제3항, 법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영 제20조의2제6호				
(1)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때		면허효력 정지 3월	면허효력 정지 6월	면허효력 정지 12월	
(2)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때		면허효력 정지 6월	면허효력 정지 9월	면허효력 정지 12월	
(3)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한 동물에 대하여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3월	면허효력 정지 12월	
(4)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때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5)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1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때		면허효력 정지 15일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6)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행한 때		면허효력 정지 6월	면허효력 정지 9월	면허효력 정지 12월	
10. 동물병원이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33조제1호	경고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2월	
11. 동물병원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법 제33조제2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비고
		1차	2차	3차	
하계한 사실이 있을 때		3월	6월	12월	
12. 동물병원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3조제3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2월	
13. 동물병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33조제4호	경고	시설보완 시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2월	제 3차 처분은 시설보완 보고 일부부터 적용한다.
14. 동물병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33조제5호				
가.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이 당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나. 및 다. <삭제>					
라. 동물병원이 법 제30조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마. <삭제>					

(뒷면)

수의사면허증재교부등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농림부 민원실	처리기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수 수 료	2,000원(정부수입인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갱신의 경우 수수료 면제)		
구 비 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증이 못쓰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못쓰게 된 면허증과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합판)1매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실경위서와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합판)1매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등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면허증과 그 증빙서류 및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합판)1매 수의사면허증 갱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증 1부(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실경위서) -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합판)2매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합판)1매 		
근 거 법 규	<p>수의사법 시행규칙 제4조(면허증의 재교부등)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받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잃어버린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실경위서와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합판)1매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면허증과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합판)1매 기재사항 변경등의 경우 : 당해 면허증과 그 증빙서류 및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합판)1매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합판)1매 <p>제5조제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실경위서)과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합판)2매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7. 1. 17>

수의사면허증 분실경위서

면허번호		① 면허일자	년	월	일
성 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전화 :)				
분실경위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p>					
농림부장관 귀하					

27274-22711일
'99. 7. 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8.10>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2.9>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동물병원개설신고서						처리기간	
						4일	
※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 설 자	성 명	한글		면허 번호		주민 등록 번호	
		한자					
	주 소		(전화:)				
본 적		(호주:)					
② 동 물 병 원	명 칭						
	개설장소		(전화:)				
	개설일		년 월 일				
③ 진 료 수 의 사	성 명	한글		면허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비 고
		한자					
	주 소						
	본 적						
	성 명	한글		면허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비 고
		한자					
주 소		(전화:)					
본 적		(호주:)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물병원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 귀하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작성합니다					수입인지 붙이는 란	
	○ ③란은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종사 수의사 모두를 기재하여 비교란에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합니다.						

27274-11911민
'99. 6. 23.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면)

동물병원개설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민원실	처리기관	동물병원의 개설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수 수 료	5,000원(수입증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함)		
구 비 서 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삭제 2006.3.14>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근 거 법 규	○수의사법 제17조 ①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 의 사 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4호)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5호)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신고번호 제 호 <h2 style="margin: 0;">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h2>					
개설자(대표자)성명 :		개설자(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 물 병 원 명 칭 :					
개 설 장 소 :					
진 료 수 의 사	일련번호	면허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물병원개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인					

27274-12511일
'99. 6. 23. 개정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120g/m²

(뒷면)

년 월 일	내 역	비 고

